

Focus sector: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 노동 관행, 정보보안 관련 소송 및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 문제 발생 우려 -

최근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M&E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소송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불합리한 근로조건 등 노동 관행에 관한 문제,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정보보안 문제로 인한 소송이 빈발하고, 산업의 특성상 사회적 파급력이 큰 탓에 인종차별, 성차별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M&E산업의 ESG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배경¹

▪ M&E 산업에서의 노동 관련 소송

최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M&E) 기업들은 노동관행과 관련된 소송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M&E 산업에서는 장시간의 노동 시간,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만연한바, 노동자의 권리, 공정한 임금, 근로 조건 등과 관련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M&E 산업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소송

M&E 산업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작업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M&E 산업에서의 사회적영향력에 따른 소송

M&E 기업은 다른 산업 대비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인종 다양성, 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M&E산업 내 관련 소송 사례

(1) 노동 관련 소송

¹ [ESG Industry Report Card: Media and Entertainment | S&P Global \(spglobal.com\)](#)

- Comcast²

세계 2위의 방송 기업인 Comcast는 여러 건의 노동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자회사인 NBCUniversal은 2005년 내부적으로 흑인 직원에 대하여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은 것에 대하여 제소되었고, 최종적으로 721만 달러에 합의하였습니다. NBCUniversal은 또한 인턴들에게 급여 없이 일을 하고, 이에 불응할 시 향후 내부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제소되어, 640만 달러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Comcast의 직원들은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회사를 고소하였고, Comcast는 이에 대하여 750만달러에 합의하였습니다.

(2) 정보보호 관련 소송

- Comcast

Comcast는 2015년 캘리포니아의 Comcast Phone of California LLC 및 관련 기업에 가입한 고객의 허락 없이 약 75,000명의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하였고, 조사 결과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3,24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Comcast의 자회사인 Universal Pictures는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영화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소되었고, 이 소송에 대하여 19,225,515 달러에 합의하였습니다.

- Facebook, Netflix³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Facebook과 Netflix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약 6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행한 바 있습니다. Facebook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하였으며,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을 사유로 64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Netflix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징금 2억 20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 Twitter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Twitter가 이용자들에게 계정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고지했을 뿐, 광고주가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1억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Twitter는 2013~2019년 계정 인증 등 보안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연령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고객별 맞춤형 광고 사업에 활용했으며, 2019년 트위터의 매출액 34억달러 중 30억달러가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에 해당하였습니다.⁴

³ 페이스북-넷플릭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67억원 | Save Internet 뉴데일리 (newdaily.co.kr)

⁴ <https://www.mk.co.kr/news/it/1033218>

(3) 사회적 영향력 관련 소송

- 소셜미디어 기업(Meta, Google, Snapchat, TikTok)

펜실베이니아의 Bucks County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벅스 카운티의 젊은이들이 일상적인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야기되거나 악화된 높은 수준의 산만함, 우울증, 자살 및 기타 정신 장애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이 주장되었습니다.⁵

또한, 지난 5월 뉴욕주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총기사건의 원인이 소셜 미디어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총기사건의 가해자인 Payton Gendron은 인종차별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았으나, 그가 이용한 소셜 미디어가 그에게 인종차별주의와 백인우월주의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함에 따라 인종차별적인 총기난사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⁶

- Comcast

흑인 미디어 사업가인 Byron Allen은 CNBC 모회사인 NBCUniversal을 소유한 Comcast가 자신의 채널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인종차별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Comcast가 흑인 소유 미디어 기업들의 사업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소유주가 흑인이라는 점이 아니었다면 채널을 승인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but for 요인)가 아니라 소유주가 흑인이라는 요소가 Comcast에게 채널 불승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여부(동기부여 요인)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은 Comcast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미디어 대기업의 채널에 소수자를 대변하는 콘텐츠 제작자가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⁷

3. 국내기업의 유의점

ESG경영의 중요성 강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무단사용이나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정책처럼,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선택이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해가 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과 준법 이념을 고려한 사업 운영을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⁵ [Why Bucks County, Pennsylvania, is suing social media companies | CNN Business](#)

⁶ [Lawsuit alleges that social media companies promoted White supremacist propaganda that led to radicalization of Buffalo mass shooter | CNN Business](#)

⁷ [Supreme Court hands win to Comcast in racial discrimination suit \(cnbc.com\) A media race discrimination case with wider implications - Marketplace](#)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장슬기

변호사

T. (+82) 2 6182 8365

E. skjang@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